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외 장
람	

제26호(호외) 2022. 7. 8.(금)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2-237호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1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2-1403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3

규칙

광양시 규칙 제90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광양시 소관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4
 광양시 규칙 제902호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8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광 양 시 장

1.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양제철소 설비확장공장부지 조성사업 2단계 7차
- 광양제철소 설비확장공장부지 조성사업 2단계 8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성 명
 - 당 초: (주)포스코 대표 최 정 우
 - 변 경: (주)포스코 대표 김 학 동
-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변경없음)

- 조성된 토지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공장부지 및 원료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되,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

나. 개 요(변경없음)

- 부지조성(변경없음): 2단계 7차 509,998.6㎡, 2단계 8차 2,268,905.1㎡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2단계 7차	2단계 8차	비 고
계	509,998.6	2,268,905.1	
공장용지(㎡)	509,998.6	2,191,004.1	
도 로(㎡)		77,901	

- 매립재(변경없음)
 - 준설토사, 슬래그, 복합슬래그(FNS, 제강슬래그), 고품화벽돌, 폐연화, 재활용 골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변경없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및 경남 하동군 금남면 해면일부
- 면적(변경없음)
 - 2단계 7차 509,998.6㎡(공장부지 509,998.6)
 - 2단계 8차 2,268,905.1㎡(공장부지 2,191,004.1, 도로 77,9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단계 7차 1996. 1. 1. ~ 2022. 6. 30.
2단계 8차 1996. 1. 1. ~ 2050. 10. 30.
 - 변 경 : 2단계 7차 1996. 1. 1. ~ 2023. 6. 30. (증 12개월)
2단계 8차 1996. 1. 1. ~ 2050. 10. 30.

6.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공사비(변경없음)
 - 2단계 7차 54,934백만원, 2단계 8차 327,754백만원
-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소요 자금은 당사((주)포스코)자체 자금으로 시행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조성된 토지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공장부지 및 원료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되,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

8.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대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0.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1. 승인 조건(별첨) - 게재생략

12.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고시는 생략하되 광양시청 산단과에 고시일로 부터 14일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61-797-2932)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광양읍 칠성리 881-2번지(광양서천) 일원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무단적치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광 양 시 장

1. 공고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8. ~ 2022. 7. 15. (7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가. 위 치 : 광양읍 칠성리 881-2 일원 광양서천
 - 나. 소 유 자 : 미 상
 - 다. 주 소 : 미 상
 -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내 텐트 무단 적치
4. 게시장소 : 광양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공고
5. 처분근거 :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4조
6. 계고서내용 : “별 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광양시
소관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01호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광양시 소관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광양시 소관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2조(「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로 한다.

제3조(「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제29조”로 한다.

제4조(「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9조 ----- ----- ----- ----- ----- ----- ----- ----- ----- -----.</p>

제4조(「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3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과 제14조에 따른 읍의 과장의 직급은 별표7과 같다.</p>	<p>제13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 ----- -----.</p>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02호

붙임 :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와 관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 분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입,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화물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공사를 위한 차량(단, 18시부터 단속 종료까지 시간은 제외한다.)	공사 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관련 공문, 계약서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